

# 제21차 WCPFC 기술이행위원회(TCC) 참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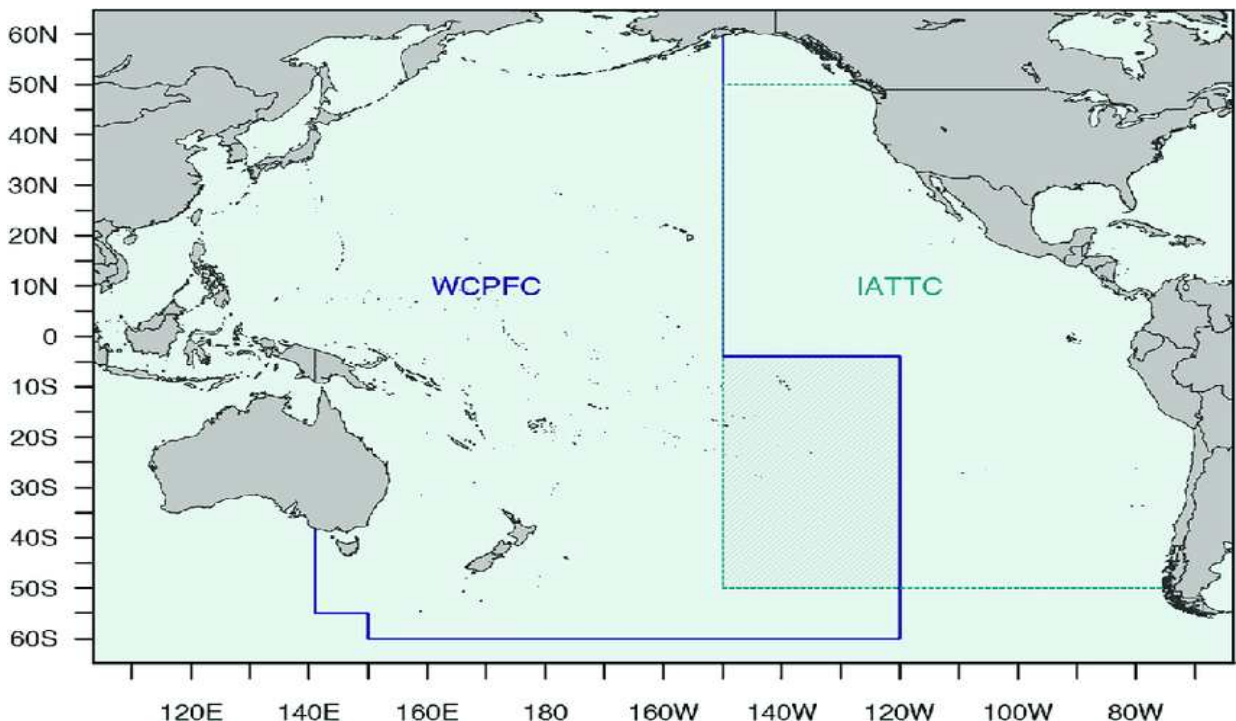
## I. 개요

- (일시/장소) '25.9.23(화)~9.30(화) 06:30~15:00(한국시간) / 화상회의
- (참석자) FFA, 미국, 캐나다, EU, 한국, 일본, 중국 NGO 등 약 150명
- (주요의제) IUU 선박목록, 협력적 비회원, 보존관리조치 이행 및 개정 검토, 차기 의장단 선출 등

## II. WCPFC\* 개요

\*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 협약 발효 / 한국 가입 : '04.6.19 / '04.11.25
- 회원국(26) : 한국, 호주, 중국, 캐나다, 쿡 제도, EU, 미크로네시아, 피지, 프랑스, 인니, 일본, 키리바시, 마셜, Нау루, 뉴질랜드, 니우에, 팔라우, PNG, 필리핀, 사모아, 솔로몬, 대만, 통가, 투발루, 미국, 바누아투
- 관리어종 : 꽁치를 제외한 중서부태평양 수역의 고도회유성 어족
- 대상수역 : 중서부 태평양 수역



## I. 주요 회의 결과

---

### □ IUU 선박목록

- 협약수역 내 무허가 조업한 인니 선박 3척을 잠정 IUU 선박목록에 올리고 인니의 추가 정보를 토대로 총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음
- 현재 WCPFC IUU 선박목록에 있는 4척을 2026년까지 목록에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음

### □ 협력적 비회원 지위

- 기술이행위원회는 8개의 협력적 비회원 지위 신청\*을 검토하였고 8개 모두 협력적 지위를 부여할 것을 총회에 권고하였음

\* 바하마, 퀴라소,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라이베리아, 파나마, 태국, 베트남

### □ 보존관리조치 이행 및 개정 검토

- (전재) 마샬은 해상 전재 금지를 주장하는 문서를 제출하였고 한국은 해상 전재 허용 근거를 설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였음
- (상어) 상어 지느러미 절단 금지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대안적인 방법에 대해 기존과 같이 찬반 의견이 대립되었음
- (바닷새) 현행 조치 개정을 위한 뉴지 문서와 일본 문서가 논의되었음\*

\* (뉴지) 현행 저감 조치 적용 확대, (일본) 최소기준(의무)과 기술적 지침(장려)을 구분

- (바다거북) 현행 조치 적용 범위 확장(천해→심해), 추가적인 저감 조치 고려 등을 논의하기 위한 바다거북 작업반을 수립하기로 하였음

### □ 기타

- (의장 선출) 마샬 추천과 회원들 지지로 현재 부의장인 나일강(한국) 주무관이 의장으로 선출 (임기 2026~27년)
- (차기 회의) '26.9.23(수)~9.29(화) / 마이크로네시아 폰페이

## II. 세부 회의 내용

---

### □ IUU 선박목록

#### ○ 인니 선박 3척

- 뉴지는 공해상 무허가 조업 혐의로 인니 선박 3척을 IUU 선박목록 초안에 포함시킬 것을 회기간 제안하였음(25.7.13)
- 인니는 해당 선박들은 참치 조업 허가가 아닌 작은 원양어종들에 대한 허가가 부여된 선박들로 제재금(약 15,000 USD)을 부과했고 추가 조사를 통해 추가 벌칙 부과 여부가 검토될 것이라고 하였음
- 회원들은 벌금 규모가 위반에 비해 적음을 언급하였고 추가 조사 완료 후 결과에 대한 정보를 인니가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음. 기술 이행위원회는 해당 선박들을 잠정 IUU 목록에 유지하고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음

#### ○ 현재 WCPFC IUU 선박목록 내 선박들에 대한 IMCS 조사

- WCPFC 옵서버인 IMCS 네트워크는 WCPFC IUU 선박목록 내 선박들(4척)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사무국에 송부하였고 회원들에게 회람되었음. 조사 결과 *Yu Fong 168*의 경우 대만에 기반하고 있는 어업 네트워크와 연결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대만은 자체 조사 후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하였고, 일부 회원들은 IMCS가 공개 정보를 토대로 조사를 하였으므로 본 논의 및 결과를 공개하여 IUU 근절 의지를 외부에 강력하게 보여야 한다고 하였음

#### ○ 현재 WCPFC IUU 선박목록

- 기술이행위원회는 기존 IUU 선박목록에 있는 선박 4척\*을 2026년까지 목록에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음

\* NEPTUNE(무국적), FU LIEN No.1(무국적), YI FONG 168(무국적), KUDA LAUT 03(필리핀)

□ 협력적 비회원 지위

○ 기술이행위원회는 8개의 협력적 비회원 지위 신청\*을 검토하였음

\* 바하마, 퀴라소,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라이베리아, 파나마, 태국, 베트남

- 8개 모두 작년에도 신청하여 승인된 협력적 비회원들임

○ 파나마는 도서국 EEZ 내에서 선망선 조업할 수 있는 권리 신청을 하였고, 이 선박들은 기존 에콰도르 선박들의 기국 변경에 불과하여 선망선 어획노력 증가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음. 참여적 권리에 대해서는 12월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음

○ 기술이행위원회는 협력적 비회원으로서의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22차 총회가 8개 신청국들에 대한 협력적 지위 부여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음

\* 보존관리조치 준수, 이행 정보 및 데이터 제출, TCC 회의 참석, 기한 내 분담금 납부

**【 '25년 협력적 비회원 참여 권리 】**

협력적 비회원	'25년에 부여된 참여 권리
바하마	운반선으로 전재 활동
퀴라소	운반선으로 전재 활동
에콰도르	협약수역이 아닌 해역에서 선망선 조업
엘살바도르	협약수역 내 공해에서 선망선 조업 29일
라이베리아	운반선으로 전재 활동
파나마	운반선과 병커선으로 전재 및 공급 활동(FAD 금지)
태국	운반선 및 병커선으로 전재 및 공급 활동
베트남	운반선 및 병커선으로 전재 및 공급 활동

□ 보존관리조치 이행 검토

○ 주요 이행 이슈

구분	주요 내용
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어 어획량 집계를 위한 “역량 지원 필요 상태” 계속하기로 하였음</li> <li>• 예산 부족, 법령 미비 등으로 선망선 옵서버 승선율 미달 이슈가 지속되고 있고 “역량 지원 필요 상태” 계속하기로 하였음</li> <li>• 열대다랑어 조치 어류군집장치 금지 불이행이 여전히 있음</li> <li>• 구속적인 고래상어 조치가 미비함</li> </ul>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부족으로 선망선 옵서버 승선율 미달 이슈가 지속되고 있고 “역량 지원 필요 상태” 계속하기로 하였음</li> <li>• 유자망이 완전히 금지되고 있지 않아 불이행임을 확인하였음</li> <li>• 열대다랑어 조치 어류군집장치 금지 불이행이 여전히 있음</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방 청새치 어획량을 ISC(북방위 과학 담당)에 보고했으나 연례보고에는 누락되어 불이행으로 확인하고 정보가 제출되면 총회에서 해소 가능</li> <li>• 북위 20도 이북 선망 선어 조업 커버리지 5% 요구사항 관련, 일본이 제출한 정보는 선어와 냉동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불이행으로 확인함</li> <li>• 남방 참다랑어를 조업하는 선박도 남방 날개다랑어 조업선으로 보고되었어야 하나 미보고되었음</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MS 보고가 기국 당국에는 이루어졌으나 사무국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음</li> <li>• 선망선에 승선한 옵서버가 보고서를 미제출하였음. 기국 통제 밖에 있는 일인지가 쟁점이 되었고 평가요소를 검토하기로 하였음</li> </ul>

- EU는 ‘개도국 역량 지원 필요 상태’를 부여할 경우, 지원을 받은 후 이행 개선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가 있어야 하고, 특히 계량적인 한도는 수치로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 열대다랑어 조치(2023-01) 25항 및 26항

25항. 소도개도국이 아닌 CCM들은 북위20도와 남위20도 사이 공해에서 첨부1에 제시된 한도 이내로 선망선 어획 노력을 제한해야 한다. 단, 필리핀은 첨부2에 따라 공해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6항. CCM들은 선망선에 대한 이러한 어획 제한이 협약수역 남위20도 이남 및/또는 북위20도 이북 해역으로 조업일수 노력이 이전되어 그 효과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열대다랑어 조치 26항에 규정되어 있는 어획 노력 이전 금지가 소도 개도국들(SIDs)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논의되었음\*

\* 25항은 비SIDs에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6항에는 CCM으로 규정

- 해당 조항들과 평가요소들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하였음

○ **24개월 이상 경과한 이행사건 파일시스템(CCFS)\* 내 사건 처리**

\* CCM 또는 ROP 옵서버에 의해 불이행으로 보고된 사건들을 종합한 파일시스템

- 기술이행위원회는 ROP 작업반이 CCFS 사건의 통보 지연을 줄이기 위해 ROP 데이터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우선순위로 하도록 총회에 권고하기로 하였음

- 기술이행위원회는 CCFS 미결 사건들에 대해 사무국이 지속적인 검토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였음

\* '조사 미완료' 상태로 분류된 사건들과 선장/선원 변경, 선박 또는 선주/선사 부존재, 공소시효 도과, 기국 변경 등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건들

- 기술이행위원회는 CCM들이 사무국에 공소시효에 관한 정보와 자국 CCFS 사건 조사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음

○ **선망과 연승 간 감시 비율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샘플링 방법**

- 선망과 연승 간 옵서버 승선율 차이(100% : 10%)로 인해 불이행으로 보고된 선망선 사건이 훨씬 많아 이행평가 과정에서 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사건 샘플링 방법이 이전 연도들과 같이 논의되었음

- 연승 CCM들은 연승 옵서버 승선의 어려움, EM 도입으로 승선율 상향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미국은 감시 비율을 보면 선망이 높지만 데이터 수집, 공해승선검색 대상, 사건 처벌 비율에서는 반대로 연승이 높음을 언급하였음

- 일부 회원들은 현재 수확 전략 개발 등 위원회의 중요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무국 업무부담을 고려할 때 이 샘플링 방법 개발의 시급성을 의문시하였음
- 기술이행위원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받기로 하고 이를 토대로 의장이 22차 총회에 샘플링 방법 옵션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음

□ 보존관리조치 이행 관련 정보 및 권고

○ 포괄적인 WCPFC 감시 제도 제안 (미국)

- 미국은 지역옵서버제도(ROP) 작업반의 목적과 전자 보고 및 전자 감시(ERandEM) 작업반의 목적이 동일하므로 두 개 제도를 포괄하는 하나의 보존관리조치 및 작업반 수립을 제안하였음

구분	'25년 임무
<b>ERandEM 작업반</b>	① ROP 데이터 수집 최소기준에 불포함된 데이터 항목 검토 ② ROP 모델에 기반한 평가 과정 개발 ③ 전재를 위한 EM 데이터 기준 고려
<b>ROP 작업반</b>	① ROP 데이터 수집 최소기준 개정 검토 ② 옵서버 커버리지 상향 권고 고려 ③ EM을 포함한 최신 기술 관련 권고 고려

- 기술이행위원회는 제안의 취지에 공감했으나, 우선은 각 작업반 임무를 속히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향후에 고려하기로 하였음

○ 전재 (마샬, 한국)

- 마샬은 해상전재 금지를 주장하는 문서\*를 제출하였음

\*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연승선 해상 전재가 관행이 되고 있고, 해상 전재 감시가 항구에 비해 취약하여 IUU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항구에서만 전재해야 함

- 한국은 해상전재 허용 근거를 설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였음

\* 연승 조업의 특성 고려 필요, IUU 우려는 감시 조치로 해소 가능, 해상 전재는 타 기구 및 국제규범에서도 허용되고 있음

- FFA, 미국, EU는 마샬 주장을, 일본, 중국, 대만은 한국 주장을 지지하였음

○ 상어 (일본)

- 일본은 상어 보존관리조치 내 대안적인 방법\*에 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상어 지느러미 절단 금지(8항) 면제: ① 몸통과 상응하는 지느러미가 같은 포대에 보관될 경우 ② 몸통과 상응하는 지느러미가 줄 또는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③ 검색관이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몸통과 상응하는 지느러미가 태깅되어 있고 로그 북에 보관 위치가 기록되어 있을 경우

- 일본은 자국 선어 연승선단들은 자연적 부착을 하고 냉동 연승선단들은 대안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음. 상어의 완전한 이용과 가혹한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인들에게 유연성이 필요하고, 조치에 대한 이행 검증은 항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음. 지느러미를 단독으로 찾는 것이 검색의 핵심인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부착되었을 경우와 다를 것이 없다고 하였음

- 중국과 대만도 일본 입장에 동의하였음. 자연적 부착의 경우 지느러미의 경제적 가치 상실 우려, 선원 위험 발생, 연승 수입원 확보, 어창 활용 어려움 등이 근거로 언급되었음

- 미국, 캐나다, EU, 프랑스, 뉴칼레도니아, NGO 등은 상어 대안적인 방법이 이행 검증에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였음

- 기술이행위원회는 상어 조치(2024-05) 부록2에 CCM들이 대안적인 방법 조항 불이행 사례들과 대안적인 조치에 의한 상어 어획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하였음

- 기술이행위원회는 사무국이 자연적 부착과 대안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CCM들의 보고된 정보를 구분하여 종합하도록 하였음

- CCM들의 연례보고 2부 보고정보는 비공개 정보이므로 향후 TCC에서 논의 방법에 관한 옵션을 사무국이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음

○ 바닷새 (뉴지)

- 뉴지는 작년 총회에 제출했던 바닷새 조치 개정 제안서\*를 제출하였음

구분	주요 내용
남위 30도 이남	남위 30도 이남에서 연승선은 다음 2가지 중 하나를 해야 한다: a) 다음 <del>중 2가지 이상 3개 모두 실시</del> : 무게추, 야간투승, 토리라인 b) 낚시 보호 장치
남위 25도~30도	남위 25와 30도 사이에서 연승선은 다음 <del>1가지-2가지</del> 이상 실시 : 무게추, 토리라인, 낚시 보호 장치
무게추 사양	i. 다음 최소 사양이 요구된다: a) 낚시 50cm 이내 지점에서 40g 이상 무게; 또는 b) 낚시 1m 이내 지점에서 <del>45g 60g</del> 이상 무게; 또는 c) 낚시 <del>3.52m</del> 이내 지점에서 <del>60g 80g</del> 이상 무게; 또는 <del>d) 낚시 4m 이내 지점에서 98g 이상 무게</del> d) 무게추가 낚시에 바로 부착되어 있거나 붙어 있을 경우 총 무게 50g (낚시 포함)이면 충분하다. ii. 이 방법을 적용할 때 모든 아릿줄의 무게가 측정되어야 한다 iii. 조명 장치 또는 무게추로서 기타 어업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침강속도 0.5m/s로 5m 깊이까지 도달하지 않는 한 권장되지 않는다.

- 회원 및 NGO들은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고 뉴지는 표명된 의견들을 참고하여 수정된 제안서를 총회에 제출하겠다고 하였음

구분	주요 의견
일본	1) 이 제안서는 과학위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았음. 논의 자체는 가능 2) 낚시 보호 장치는 낚시만 보호하고 미끼는 보호하지 않아 바닷새에게만 완벽한 조치임. 어업과 바닷새 보호 간 균형이 필요 3) 효과성이 입증된 야간 투승도 남위 25-30도 사이에 포함 필요 4) 야간에 투승을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동이 트면 무게추 사용으로 전환하고 있음. 3개 조치를 모두 하는 것은 불가능함
중국	1) 무게추 사용은 반작용으로 인해 선원에게 위험하고 어획효율이 저하됨 2) 낚시 보호 장치는 고장과 분실로 인해 비용 부담 3) 야간 투승은 어두워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주간 투승 필요
마셜	바닷새 자원상태가 부정적이므로 본 제안서는 필요하고 지지함
호주	EM 또는 읍서버가 없는 선박만 3개 조치 모두 실시하는 것을 제안

○ 바닷새 (일본)

- 일본은 현재 WCPFC 바닷새 조치는 타 기구들과 달리 최소기준(의무)과 기술적 지침(장려)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이행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두 개를 구분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였음

\* (주요내용) ①토리라인 모릿줄 길이, 토리라인 봉 높이, 부속 장비, 스트리머 고리, 색깔, 스트리머 및 모릿줄 재료, 토리라인 개수에 관한 내용을 최소기준이 아닌 기술적 지침으로 분리 ②낚시 투승 지점은 기술적 지침이 아닌 최소기준으로 포함 ③선원들의 이해를 위해 토리라인 사양에 대한 모식도 제공

- 중국, 뉴지, ACAP 등은 일본 제안서를 지지하였음

○ 바다거북 (미국)

- (배경) 24년 총회에서 26년에 바다거북 조치(2018-04)를 검토하고 개정하기로 하여 미국은 이를 위한 비공식 작업반 수립을 제안

- (주요내용) 조치 적용범위를 천해에서 심해로 확장, 조치 내 보고 요구사항들을 보다 명확히 규정, 바다거북 분포, 번식 등 과학정보와 부수어획 현황, 저감조치 등을 검토

- (논의결과) 비공식 작업반을 수립하기로 하였고 동 작업반\*은 논의 결과를 내년 과학위 및 기술이행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음

\* 1차 회의: '26년 1-2월 중, 2차 회의: '26년 4-5월 중

○ 해양오염 (캐나다)

- (배경) 현재 해양오염 조치는 3년마다 조치 개정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24년 총회에서 26년 채택을 목표로 회기간 작업을 요청하였음

개정 제안
(적용 범위)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이 허가된 다음 범주 어선들에 적용: a. 협약수역 공해 내 어선, b. 공해와 연안국 EEZ 내 어선, c. 2개 이상 연안국 EEZ 내 어선 d. WCPFC 어선 등록부 내 어선

<b>(어구 정의)</b> MARPOL 및 SPRFMO의 '어구(fishing gear)*' 정의 도입 * 해양 또는 담수 생물의 포획 또는 수확을 목적으로 수중 또는 해저에 배치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장치 또는 그 일부 또는 장비들의 조합
<b>(수중 소음)</b> CCM들은 자국선들에게 선박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수중 소음을 평가하고 저감할 것을 장려
<b>(노천 소각)</b> 어구, 전자 폐기물, 쓰레기, 플라스틱의 노천 소각(Open burning)* 금지 * 배출 규제가 없는 연소
<b>(유기·폐기)</b> 어구 유기 또는 폐기 금지(7항에서 분실 또는 국제법에서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 - 선박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어구는 유기 또는 폐기로 간주되지 않음 - 조업활동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유기된 것으로 간주
<b>(회수 불능시 보고)</b> 선박에서 분실, 유기, 폐기된 어구(ALDFG)를 회수할 수 없을 경우 72시간 내 관련 정보를 당국에 보고
<b>(분실 어구 정보)</b> 분실 어구 회수를 위해 CCM들은 ALDFG에 관한 정보를 사무국에 즉시 전달
<b>(ALDFG 요약보고)</b> 사무국은 연례보고에 제공된 ALDFG 관련 정보를 종합한 요약 보고를 매년 총회에 제공
<b>(미사용 어구 보관)</b> 사용 불가능한 회수된 어구를 다른 쓰레기들과 구분하여 보관하고 이를 선박 적하도에 기록
<b>(폐기물 기록부)</b> 선상 어구, 전자 폐기물, 쓰레기, 플라스틱에 관한 기록부를 두도록 보장
<b>(생분해성 어구)</b> ① 해양쓰레기 감축을 위해 비플라스틱 및 생분해성 재료들로 어구 전환 장려 ② 총회는 20XX년까지 생분해성 어구 요구사항 이행에 관해 결정
<b>(항구 목록)</b> CCM들은 적절한 접수 시설을 가진 자국 항구 목록을 사무국에 제공
<b>(이행 시점)</b> 조치 이행 시점 (캐나다) 2026년 (FFA) 2028년

- (논의결과) 본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회원들은 26년 조치 개정을 목표로 협력 의사를 표명하였음

○ 선박감시시스템(VMS) 보고 상태 도구(VRST) (일본)

- (배경) 선박이 입항하여 VRST 상태를 '항구 내'로 설정하여도 보류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어 기국이 매일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 발생

- (제안) ① 상태가 '항구 내'로 설정되면 기국 EEZ 밖에서 VMS 수신이 되기 전까지는 동 상태를 유지 ② 기국이 자국 선박들의 VRST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한달에서 1년으로 연장 ③ 상태 변경 할 수 있는 기간을 한달에서 1년으로 연장

- (결과) 제안 1과 2는 합의하고 3번은 추가 논의하기로 함

## □ 기타

- (의장 선출) 마샬 추천과 회원들 지지로 현재 부의장인 나일강(한국) 주무관이 의장으로 선출
- (차기 회의) '26.9.23(수)~9.29(화) / 마이크로네시아 폰페이